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사업주와 근로 자가 매달 보수의 일정액을 고용보험료로 낸다. 근로자는 직업훈련을 받을수 있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유지 지원 및 교육훈련 비용을 받을수 있다.

01 사회보험

한국 국적이 있는 자가 취업하면 관련법 적용 대상인 경우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02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위한 활동 지원금이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

(1)적용대상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그만 둔 경우

25. 4. 27. 오전 11:21 한국생활안내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단,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둔 경우나, 직장에 중대한 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알아두세요!

고용보험 가입자격

체류자격별로 고용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진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체류자격: A1~A3, B1~B2, C1~C3, D1~6, D10, F1, F3, G1, H1

고용보험에 당연가입되는 체류자격: E9, F2, F5, F6, H2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체류자격: D7~D9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체류자격: C4, E1~E8, E10, F4

(2)실업급여 혜택

실업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지급일수(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실업급여 지급일수 :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 일수)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이상 ~ 3년 미만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 50세 일 현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5. 4. 27. 오전 11:21 한국생활안내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재 연 령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비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

(3) 신청절차

실직하면 인터넷으로 고용24를 통하여 구직등록 후 즉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을 통지해 준다(불인정 시 서면 통보). 25. 4. 27. 오전 11:21 한국생활안내

1~4주 단위로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는다.

실업인정기간 동안 실업상태 및 재취업을 위한 활동(이력서 제출, 사업체 면접 등)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03 자영업자 고용보험

(1) 가입방식

임의가입(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

(2) 가입대상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중에서 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②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고용보험법상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법인이 아닌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소규모공사, 가사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자는 가입 제외

만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가입 가능

(3)기준보수 및 보험료

기준보수 : 보험료와 구직급여의 산정기준으로, 7등급 중 선택 가능(연 1회 한도로 변경 가능)

보험료: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기준보수에 따른 월 보험료 및 월 구직급여

(단위 : 원)

25.4.27.오전 11:21 한국생활안내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 수	1,820,00	02,080,00	02,340,00	02,600,00	02,860,00	03,120,00	03,380,000
월 보험 료	40,950	46,85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구직급 여	1,092,00	01,248,00	01,404,00	01,560,00	01,716,00	01,872,00	02,028,000

(4)혜택

(실업급여)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월 109.2~202.8만원)을 120~210일간 지급

78	가입 기간(피보험기간)					
구분	1~3년	3~5년	5~10년	10년이상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직업능력개발)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훈련비용 지원

^{*} 내일배움카드제 : 계좌발급일부터 5년간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비 일부 지원